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46 발의연월일: 2022. 1. 3.

발 의 자:김경만·강득구·강선우

김정호 · 송기헌 · 송옥주

이동주 • 이수진 • 이용빈

임종성 · 홍성국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주요기술 111건 중에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기술도 35건 포함됨. 특히 기술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66건을 차지했고,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등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음. 반면, 유사한 법률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유출의 고의성만 입증되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각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제36조(벌칙) 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u>사용되게</u>	외국에서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	
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	②
하거나 <u>사용되게 할 목적으로</u>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	<u>알면서도</u>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